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2. .

제안자 : 행정안전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을 위해 그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, “지급하여야 한다”는 표현이 선임권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이를 “지급할 수 있다”로 수정하려는 것임.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지급하여야 한다”를 “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제34조의2(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) 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회의원의 보좌관·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기간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부터 회계책임자가 해임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등을	제34조의2(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지급할 수 있다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	② (개정안과 같음)

<u>선임권자에게 인계 한 때까지로 한다.</u>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8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1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박수현 · 강준현
김 윤 · 박해철 · 신정훈
김영호 · 임미애 · 박지원
김민석 · 이병진 · 박홍근
장종태 · 박용갑 · 김종민
차지호 · 이기현 · 허성무
김영환 · 박희승 · 박정현
민형배 · 이상식 · 안규백
박선원 · 모경중 · 홍기원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,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,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.

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,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

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과 관련해 “지급하여야 한다”는 표현이 선임권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이를 “지급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(안 제34조의2제1항 본문).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) 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회의원의 보좌관·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기간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부터 회계책임자가 해임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등을 선임권자에게 인계한 때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4조의2(회계책임자에 대한 보</u> <u>수 지급) ① 선임권자는 회계</u> <u>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</u> <u>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</u> <u>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</u> <u>수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국</u> <u>회의원의 보좌관·선임비서관</u> <u>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</u> <u>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하</u> <u>지 아니하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</u> <u>기간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</u> <u>때부터 회계책임자가 해임되거</u> <u>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</u> <u>부등을 선임권자에게 인계한</u> <u>때까지로 한다.</u>